

예산총칙

2018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계	554,300,000	16,629,000
일반회계	541,700,000	16,251,000
일반회계	541,700,000	16,251,000
특별회계	12,600,000	378,000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기금특별회계	530,000	15,90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990,000	29,700
지하수관리특별회계	650,000	19,500
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특별회계	6,630,000	198,900
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	35,000	1,050
주차장특별회계	3,765,000	112,95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”와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570,421천원으로 한다.

(일반예비비 5,070,421천원, 목적예비비500,000천원)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3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